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의록)

국회사무처

일시 2026년9월3일(목)

장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6)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3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1)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2)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7)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40)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 번호 2217723)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991)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6)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97)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520)
 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027)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449)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03)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3)
 2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정된 안건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4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4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4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4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7) 4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8) 4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6) 4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32)	4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21)	5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82)	5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55)	5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487)	5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6840)	5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723)	5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991)	5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006)	5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8897)	5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9520)	5
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027)	5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449)	5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20803)	5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5
2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5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5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11시09분 개의)

○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자로 최기상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소영 위원님께서 보임하셨고 김형연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선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보고사항은 단말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원직을 승계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형연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연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연 위원**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김형연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회의원직을 승계하여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합류한 만큼 더 많이 배우고 더 부지런히 뛰겠습니다.

정무위원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고 금융소비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뢰에 맞게 일하도록 살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법원과 정부,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바로잡아야 할 문제에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삶에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형연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법조·법제 분야에서 지금껏 쌓아오신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훌륭하게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1)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06)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2)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44)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7)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8)
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16)
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232)

1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21)
1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882)
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455)
1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487)
1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840)
1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723)
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991)
1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006)
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8897)
1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520)
2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027)
2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449)
2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0803)
2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2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2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6)
2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시12분)

○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1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까지 이상 2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상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법안심사 검토보고 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출 위원 박상혁 간사님 협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시간은 2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대출 위원 짧게, 길게는 필요 없습니다.

어제 우리 법안심사2소위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요지는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지연 사태가 없도록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법안심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떤 이견도 없는 원칙 하나는 있었습니다. 납품업체의 피해가 반드시 없어야 한다, 납품대금 지급이나 불능으로 인한 피해는. 그래서 기한 단축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지나친 과도한 단축으로 인해서 유통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그 유통업체의 부담이 유통업체의 부담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납품업체의 부담이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겠다, 저는 이런 부분을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해당 유통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문 물량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이로 인한 피해로 유통업체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있어서 그런 현상으로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납품업체를 위한다는 법안이 납품업체에 피해를 주는 법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대단히 걱정을 했습니다.

어제는 사실상 법안심사 첫 심사였던 만큼 신중히 하자는 입장에 의견을 제시했는데 단축의 필요성이 워낙 시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안심사 결과를 두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여야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간사님들,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하나의 완충장치는 지금 수정의견으로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도산 걱정, 도산 우려를 좀 더 최소화하자는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아직 주문 물량이 축소되어 가지고 결국은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심사 결과가 나온 뒤에 아시다시피 5개 업체에서 반대한다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지혜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걱정되는 부분을 제가 속기록에 반드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위원 위원장님 저도 1분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동수 보고하고 하시지요.

박대출 위원님의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균형 있는 법안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려의 말씀도 잘 새겨들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혁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상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상혁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대안 1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인영, 송언석,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민 금융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유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트북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상혁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일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서일준 우리 박상혁 간사님이 저쪽에 서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섰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예.

○소위원장 서일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서일준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수정안 1건을 의결하고 대안 2건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임미애 의원, 오세희 의원, 김남근 의원, 김동아 의원, 이만희 의원, 박상웅 의원, 송재봉 의원, 민병덕 의원, 김현정 의원, 김용만 의원, 이양수 의원, 이주희 의원, 강민국 의원, 김승원 의원, 임이자 의원, 최기상 의원, 이강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18건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 거래 등의 경우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직매입 거래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각각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직매입 거래에서 월 1회 정산하는 경우에는 월 매입 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대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지급 기한의 예외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김현정 의원, 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2건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권익위 신고 사건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고 피신고자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권익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서일준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두 분의 소위원장님과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법안심사 제1, 제2소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섭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게 유통업체랑 납품업체 간의 상생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경영상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대규모유통법의 제8조 2항 3호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 수정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안에서 새로운 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파산·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럼으로써 시장이나 경영상에서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는 조항으로 바뀌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민병덕 위원 다시 한번……

○김재섭 위원 예?

○민병덕 위원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위원장 유동수 3항 다시 한번 읽어 주시지요.

○김재섭 위원 파산·회생,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호가, 현재 안으로는 3호가 수정이 되면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4호는 삭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동수 여러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민병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병덕 위원 우리가 티메프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정산 기한이 긴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파산하면서 정산받지 못한 수많은 피해들이 있고 그분들의 피해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았습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정산 기한 동안에 돈놀이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자는 것이고.

물품을 납품하고 그 물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나서 판매한 금액을 납품한 사람한테 주면 됩니다. 여기에 기한이 필요하다면 계산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 시간을 60일에서 35일간이나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실은 의문입니다. 이것도 훨씬 줄여야 한나라는 부분을 저는 주장했다라는 것을 일단 남기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35일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예외 규정이

며칠까지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외 규정도 이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모두에게 책임 없는 천재지변, 그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규모유통업자, 즉 돈을 정산해야 되는 사람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인데 돈을 지급해야 되는 사람, 즉 대규모 유통업자에 책임 있는 사유일 때에도 예외를 두는 것인데 그때 파산과 회생에 준하는 그런 사정일 때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라는 아주 두리몽실한 이런 것을 가지고 정산 기간 단축에 예외를 두게 되면 모두 다 이것을 이용할 소지가 큼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산 기간을 단축해서 균형을 맞추는 여기에 대해서 급격한 현금 흐름 악화라는 조항은 굉장히 옥에 티가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민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 이 법 저도 상당히 강하게, 이 법 피해자들하고 워낙 오랫동안 같이 회의를 하면서 정산 기간을 대폭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여야의 합의 정신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형태에서 백 번의 양보와 양해를 거쳐서 이 법을 저도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주지 않고 그 돈을 돌려쓰는 행위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니 네 돈 나중에 줄게’ 그런데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힘 센 아저씨 정도 되는 거고 납품업체는 진짜 초등학교보다 힘이 없는 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향후 정산 주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예기간이 1년이나 있어요. 그리고 30일이나 20일로 당긴 것이 아니라 35일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기 때문에 차후에 1~2년을 실현을 해 보고 정산 주기를 많이 당겨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고 이미 큰 피해를 줬던 사례가 어떤 거냐 하면 현금 흐름이 좀 위험해지니까 대형 판촉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벌여서 현금을 완전히 다 당겨 버린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몇 배 더 증폭시켰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라고 돼 있어서 제가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그걸 활용해 가지고 피해자를 몇 배로 양산시켰던 사례들이 지금 계속 나왔던 것 같아서,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기록에 남겨서 향후에도, 일단은 제가 합의 정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고 그냥 받아는 들이겠지만 향후에 이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추후에 1~2년 뒤에 2~3년 뒤에 법을 바꿀 때는 지금의 기록이 기준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이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훈 위원 저도 민주당 위원님들의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도변경에 있어서 그 역설이라고 하는 점을 한번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러한 제도변경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호하고자 했던 중소·영세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는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제도변경에 앞서서 공정위가 경제적 역량 분석이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발주량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저마진 상품이 퇴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영세 납품업체의 거래가 줄어들거나 아예 단절이 될 수도 있고요.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회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당초 의도했던 중소·영세 납품업체의 이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법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저희가 가 보지 않은 길이고 원했던 결과와 전혀 다른, 오히려 영세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유통업체가 도산을 하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중소·영세 납품업체가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정위에서 시행 이후에 발주량, 납품업체 수, 거래액, 소비자가격 등 핵심 지표를 좀 분석을 해서 과연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착이, 연착륙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근거나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고 저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동수 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임위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진지하게 잘 토의되고 논의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소위원회가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소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발언하는 것은 특별히 사정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이 있는 부분은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시는 건 맞다고 보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들께도 발언할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소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회에 분명히 그런 기록들이 다 남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록에 충분히 그런 기록을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전체회의에서는 발언하지 않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위원회 기록에 남겨 있는 부분들은 소위원회 기록대로 이렇게 남겨 주시기를 바라고 전체회의에서는 소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위원님들이 발언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연 위원 조국혁신당 김형연 위원입니다.

원래 민법상 물건을 받으면 받은 날 물건대금을 줘야 됩니다. 만일에 그날 주지 않으면 그날로부터 연 6%의 이자를 지급해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납품대금의 지급을 한정 없이 늦추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이 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법에서도 그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납품대금을 강제합니다. 최소한 언제까지는 줘야 된다고 강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일 이후에 준다고 그래도 이자 안 쳐 줍니다. 그냥 원금만 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자도 안 주고, 원래는 민상법상 이자 쳐 줘야 되는 것을 이자를

안 주고 주는 기간을 40일을 20일로 당기고 60일을 35일로 당기는데 그것을 당기면서 단서에다가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를 집어넣는다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어렵습니다.

기업이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나쁘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단서 조항에 두면서 그나마 지금 20일, 25일 단축시켜 놓은 것마저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저는 깊은 의문이 듭니다.

다만 존경하는 여러 여야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부분을 넣는 것을 전제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제 의견을 고수하면 아마 오늘 의결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당기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저는 상당한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의 합의된 안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김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깊은 여러 가지의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호에 이런 수정안을 제안하는 배경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속기록에 남기고, 향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맞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이 경우는 조금 전에 김형연 위원님이 법리적인 말씀도 주셨고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파산·회생에 준하는 정도의 긴급한 경영상의,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자신들의 변명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파산·회생에 준하는 그런 정도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하고 또 나중에 승인을 통해서 해야만 나중에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그런 갑의 지위에서 을을 압박하거나 겁박해서 승인을, 무슨 합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오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하시고 대통령령을 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빨리 표결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거라서 잠깐만…… 제가 잠깐 중요한 말씀을, 방금 간사님 하신 말씀에……

○위원장 유동수 1분만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조금 전에 여야 합의의 정신으로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라고 넣었을 때 방금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님이 공정위에 당부하신 이야기에 조금 국민의힘은 결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파산·회생에 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좁혀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기적인 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회사의 현금을 소진하는 경우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공정위에서 걸러 주실 것 같지만 파산·회생이 아니더라도, 저는 오늘 이번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회사들을 쫓 보니까,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몇몇 회사들은 지금 되게 어려운 현금 흐름하에서 온라인유통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십억 정도의 이런 이자 부담이 추가적으로 생기면 그 회사가 협력업체

들에게 부담을 더 지우거나 아니면 구매 물량 자체를 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파산·회생에 준하는 게 아니고 급격한 현금 흐름의 악화에 대해서는 공정 위에서 합리적이고 시장에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량한 유통업체를 보호하는 게 결국은 협력업체들과 전체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전제하에서 아까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 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수 최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박홍배 위원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유동수 아닙니다. 안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와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및 제79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수정안 또는 대안에 대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4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8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의사일정 제23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및 제26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각 기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보좌직원 여러분,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 위원(22인)

강준현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김형연 민병덕 박대출 박민규 박상혁 박성훈
박준태 박홍배 서일준 손명수 송언석 신동욱 유동수 이강일 전현희 최은석
한민수 한창민

○청가 위원(2인)

이소영 조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구현우

전문위원 류승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부위원장 남동일

기획조정관 김문식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

부위원장겸사무처장 한삼석

기획조정실장 임진홍

부패방지국장 김기선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손주형

금융소비자국장 김동환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김은경

【보고사항】

○위원 선임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김형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조국혁신당)	2026. 9. 1.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최기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2026. 9. 1.

○의안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1.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98)

8월 24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1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3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4.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44)

이상 4건 8월 25일 회부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5.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74)

8월 26일 회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0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17)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6.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24)

이상 5건 8월 27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7.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6)

8월 28일 회부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20877)

8월 31일 회부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1.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8. 31.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59)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9. 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90)

이상 3건 9월 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자립준비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8. 20.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673)

8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6. 8. 26.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797)

8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8. 27.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2)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

(2026. 8. 27.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854)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2026. 9. 1.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20978)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접수일: 2026.8.22. ~ 2026.9.2.)

구분	입법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국가보훈부	-	7	-	1	2	-	1
국무조정실	1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1	-	-

구분	입법예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금융위원회	-	2	-	-	1	3	-
국민권익위원회	-	-	1	-	-	1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	-	2	-

○청원 회부

제도권 금융기관 외관 악용형 불법사금융 연계 복합 금융대출사기 피해 예방·피해구제 및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

(2026. 8. 31. 홍성화로부터 정태호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340)

8월 31일 회부됨

입시회의록